

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7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09. 11. 2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개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개소에 따라 사용 및 수강허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 등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9. 9. 11. ~ 9. 30. / 접수 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센터와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센터는 분원장(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센터원장과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센터원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 중 “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센터”를 “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센터와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센터”로 한다.

제3조 및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 중 “의한”을 각각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「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분원 및 분실의 명칭과 위치(제10조 관련)

| 구 분 | 명 칭 | 위 치 |
|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분 원 |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뒷길 184(법동) |
| |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동구 오리울로 32(대성동) |
| 상담분실 | 대전역 분실 | 대전광역시 동구 역전시장길 53(정동) |
| | 서대전역 분실 | 대전광역시 중구 역촌4길 30(오류동) |
| | 동부 분실 |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로 170(용전동) |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제2조(사용 및 수강허가) ①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사용 및 수강은 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u>다만,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(이하 “분원장”이라 한다)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| <p>제2조(사용 및 수강허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다만,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는 분원장(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과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-----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조(사용료 등 징수) 센터(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)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· 수강료 및 보육료를 사전에 징수한다.</p> | <p>제3조(사용료 등 징수) ---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 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----- -----<u>따른</u>----- -----</p> |
| <p>제4조(사용료 등 감면) ① (생략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5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(3급 이상) 6. 「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| <p>제4조(사용료 등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3. ----- <u>따른</u> ----- 4.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5.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6. 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|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|------|------|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--|
| <p>7. (생략)</p> <p>② 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</p> <p>제7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8조(강사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1조(위탁관리) 대전광역시장은 센터 시설의 일부 및 분실을 「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.</p> <p>[별표 3]</p> <p>분원 및 분실의 명칭과 위치(제10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원</td> <td>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</td> <td>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뒷길 184 (법동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담분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생략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명칭 | 위치 | 분원 |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뒷길 184 (법동) | <신설> | | 상담분실 | (생략) | |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</p> <p>제7조(사용자의 준수사항) ①제2조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강사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에 따른 ----- -----</p> <p>제11조(위탁관리) ----- ----- 「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에 따라 -----</p> <p>[별표 3]</p> <p>분원 및 분실의 명칭과 위치(제10조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명칭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위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분원</td> <td>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</td> <td>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뒷길 184 (법동)</td> </tr> <tr> <td>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</td> <td>대전광역시 동구 오리울로 32(대성동)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상담분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현행과 같음)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| 명칭 | 위치 | 분원 |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뒷길 184 (법동) |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동구 오리울로 32(대성동) | 상담분실 | (현행과 같음) | |
| 구분 | 명칭 | 위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분원 |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뒷길 184 (법동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신설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상담분실 | (생략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분 | 명칭 | 위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분원 | 대전광역시동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대덕구 선비마을뒷길 184 (법동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 | 대전광역시 동구 오리울로 32(대성동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상담분실 | (현행과 같음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관계 법령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대전광역시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12. 17

교육사회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11. 2 대전광역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11. 3

다. 상 정 일 자 : 제185회 제2차 정례회

제7차 교육사회위원회(2009. 12. 17)
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여성국장 조정례)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개소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대전광역시남부평생교육문화센터의 개소에 따라 사용 및 수강 허가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(안 제2조 등).

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권태환)

- 본 조례안은 가족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·교육·복지 시설로 운영 예정인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소재인 남부평생 교육문화센터가 2009년 11월 24일 준공, 개관으로 사용 및 수강허가 등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Ⅳ. 질의·답변 요지 : 생 략

Ⅴ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Ⅵ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